

Weekly Report (Real Estate)



◆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 매매가격 하락폭 축소, 전세가격 하락폭 축소 매매가격 -0.11% 하락, 전세가격 -0.18% 하락

한국부동산원 2023년 4월 4주(4.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하락폭 축소** (-0.13%→ -0.11%)

▶ 수도권(-0.13%→ -0.09%): **하락폭 축소**

- 서울(-0.08%→ -0.07%): **하락폭 축소** / 매수심리 위축과 추가 하락 우려로 관망세 유지중이나, 일부 선호도 높은 지역 급매물 소진 후 가격 상승세 나타나는 등 지역별 혼조세 양상 보이며, 전주 대비 가격 하락폭 축소
- 강북 14개구(-0.12%→ -0.09%): **하락폭 축소** / 노원(0.04%, 중계·상계) 상승, 도봉(-0.29%, 창·쌍문), 성북(-0.16%, 정릉·길음), 광진(-0.15%, 광장·자양) 하락
- 강남 11개구(-0.05%→ -0.05%): **하락폭 유지** / 송파(0.04%), 서초(0.03%), 강남(0.02%) 주요단지 급매물 소진 후 상승, 구로(-0.21%) 강서(-0.19%) 하락
- 인천(-0.02%→ -0.03%): **하락폭 확대** / 서구(0.10%, 검단·청라신도시) 상승, 미추홀(-0.17%, 승의·주안), 부평(-0.15%, 산곡·십정·일신), 남동(-0.06%, 논현·만수) 하락
- 경기(-0.17%→ -0.12%): **하락폭 축소** / 용인 처인(0.35%, 남사·이동읍) 상승, 오산(0.10%, 누읍·오산·원동) 상승, 고양 일산서구(-0.45%, 덕이·대화·탄현) 하락, 의왕(-0.36%, 내손·포일) 하락, 군포(-0.32%, 산본·금정) 하락

▶ 지방(-0.14%→ -0.13%): **하락폭 축소**

대구(-0.29%→ -0.25%) 하락, 부산(-0.22%→ -0.20%) 하락, 세종(0.17%→ 0.27%) 상승

▶ 8개도(-0.10%→ -0.10%): **하락폭 유지**

충남(-0.11%→ -0.11%), 전북(-0.12%→ -0.10%), 제주(-0.14%→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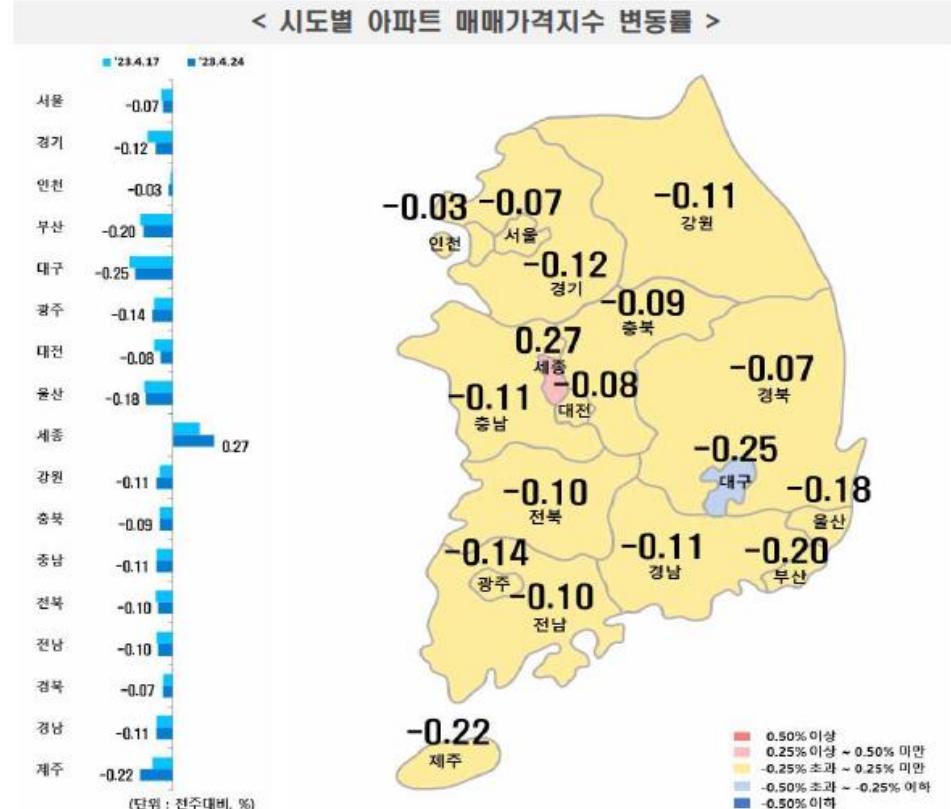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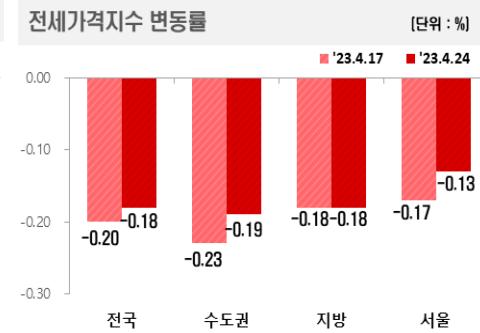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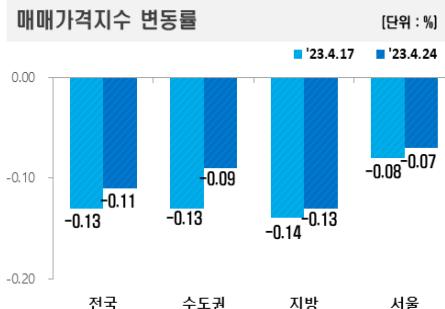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전국, 전주 대비 **하락폭 축소** (-0.20%→ -0.18%)

▶ 수도권(-0.23%→ -0.19%): **하락폭 축소**

• 서울(-0.17%→ -0.13%), 인천(-0.15%→ -0.19%), 경기(-0.28%→ -0.22%)

▶ 지방(-0.18%→ -0.18%): **하락폭 유지**

- 5대 광역시(-0.25%→ -0.24%) / 대구(-0.37%), 울산(-0.27%), 세종(0.10%)
- 8개도(-0.14%→ -0.13%) / 충남(-0.20%), 전북(-0.16%), 제주(-0.16%)



◆ 주간 주요 뉴스

■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금리인상 영향 (4/28, 뉴시스)

- 모든 자치구 하락…중·구로(-6.42%), 노원(-6.41%), 중랑(-6.36%) 순으로 하락
- 지가 하락한 토지는 85만1616필지(98.2%), 상승한 토지는 1만2095필지(1.4%)↓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일사면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5월30일)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3.6→74.9…지난주 대비 1.3P↑ (4/28, 머니S)

- 한국부동산원(4월 넷째 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월 넷째 주 66.3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3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 상승세,
- 다만 기준선 100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수세는 약한 모습
-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

■ 5월, 청약시장 ‘국지적 훈풍’에 전국 2만여 가구 공급 (4/28, 이데일리)

- 전국 3만758가구 중 일반분양 2만909가구
- 수도권 8962가구, 지방 1만1947가구 신규공급 예정



■ 주택 인허가, 착공 급감…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재연? (5/1, 중앙일보)

■ ‘한강변 70층 아파트’ 기대에…재건축단지 잇단 신고가 (5/1, 서울경제)

◆ 위클리 이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지난 4월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 이를 위해 2년 한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기고 임대로 거주 할 수 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 대금은 전액 저리(연 1~3%대)로 대출받도록 지원하며, 낙찰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재산세도 3년간 최대 50%까지 면제한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LH 등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길 경우, 공공이 주택을 매입(낙찰)해 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주며, 이때 피해자의 소득 및 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20년간 시세의 30~50%선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지, 둘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진행 중인지, 셋째,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인지, 넷째,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연관된 경우인지, 다섯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섯째,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향후 쟁점으로는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의 형평성, 야당과의 견해차이 조율 등이 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요건과 쟁점

요건	내용 및 쟁점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대항력(전임신고, 실거주) 갖췄지만 확정일자 받지 않은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지원 여부 불명확
2 경매나 공매 진행되는지	
3 서민 임차주택인지	전용 85㎡, 보증금 3억 원 안팎에서 심의위가 판단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와 연관 있는지	연관 여부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화 없음. 사기 입증 안 되면 지원 제외 우려
5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 있는지	‘다수’라는 규모 기준 없어. 피해자 소수면 지원 제외
6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 있는지	‘상당액’의 기준이 불명확
★ 6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자료 : 4/28, 동아일보)

* 위클리 이슈는 작성자 개인의 사견이며, 회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